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0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서병수·김미애·김상훈

류성걸・박수영・백종헌

서일준 · 양금희 · 이종배

정진석 · 조수진 · 조오섭

조정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 우, 해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원이 송부받아 이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현행 절차는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의안 발의와 비용추계서 작성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의안 중에서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비율이 2018년 47.7%, 2019년 57.6%, 2020년 55.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용추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 자료 등의 제출) ① -----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 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 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단서 삭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 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 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 <신 설>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 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 정책처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 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u>	3	(생	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⑤</u>		- <u>제4항</u> -		
		•		